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증원〉

■ 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53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선 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강준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5. 11. 27.
3. 회 부 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는 1997년 1,374건에서 지난해 2,49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산업의 융·복합,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또한 급격히 높아졌음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을 심의·의결하는 위원 수는 상임위원 5명(정무직인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비상임위원 4명으로 1997년과 동일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부담이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양적·질적으로 크게 증가되어 왔음에도 위원은 30년 가까이 증원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되고 피해구제 또한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병목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 1명씩 증원하여 공정거래위원회를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함(안 제57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을 2명 증원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u>9명</u>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u>4명</u> 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 ----- ---- <u>11명</u> ----- ----- <u>5명</u> ----- -----.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57조제1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면서 5명은 상임위원,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규정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 수는 1981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 출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증원되었는데,

구(舊)경제기획원 산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하여 권한과 인력이 제한적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력 남용·불공정거래 관행·경제력 집중 문제의 구조적 심화, 시장개방의 가속화에 따른 기업결합과 카르텔 규제의 필요성, ICT 발전과 디지털 경제 전환에

다른 플랫폼 경제의 등장과 네트워크 효과 등 우리나라 경제환경 변화로 그 역할과 권한이 꾸준히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위원 수 추이>

구분	위원 수	상임위원: 비상임위원
1981년~1990년	5인	3:2
1990년~1996년	7인	5:2
1997년~현재	9인	5:4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처리하는 연간 사건 수가 증가하였고, 사건의 난도도 높아진 데 반해, 위원은 증원되지 못한 상황에서 사건처리의 지연과 피해구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을 각각 1인 증원하려는 것임.

-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990년대 연간 평균 1,374건에 불과하였던 사건이 최근 5년에는 평균 2,495건으로 증가하였고 최근 5년(2021년~2024년) 기준 평균 소회의 심의 대기기간도 약 219일에 달함.

<소회의 평균 심의 대기기간(구술안전기준)>

(단위: 일)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5년)
평균 대기기간	89.1	69.2	84.2	113.4	183.4	107.6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평균 (5년)
평균 대기기간	234.2	229.5	208.0	251.5	173.8	219.4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 개정안에 따라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증원되면 카르텔 심판을 전담하는 소회의가 신설되어 심의 대기기간 감소로 전반적인 사건 처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¹⁾

□ 국회가 이미 2026년도 예산안 심사 시 위원 증원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을 증원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한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09

1)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3인의 상임위원을 각각 위원장으로 하는 소회의를 경쟁, 기업거래, 소비자 부문으로 나누어 운영 중이고, 상임위원이 1명 증원되면 경쟁에서 카르텔 분야를 분리하여 운영할 계획임.